

## My Data, My Rights! 개인데이터 권리 찾기

정부와 기업들은 오래전부터 개인정보를 활용하였습니다. 금융회사들은 고객 신용도 평가, 부정 사용 탐색, 고객 충성도 평가 등에 적용하여 왔고, 유통회사들과 통신회사들은 이탈 고객 방지, 교차 판매, 고객 점유율 확대 등의 업무에 개인정보를 활용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정보 활용은 개인정보의 주체인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업의 성과 향상을 위한 활용이었습니다. 정보주체인 개인의 관점에서는 불공평·비대칭·불평등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려는 '마이데이터 (MyData)' 개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는 플랫폼이 아닌, 데이터의 주체인 개인이 개인데이터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원하는 곳에 원하는 방식으로 활용하여, 개인이 그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본 안내서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만들고 운영하는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에 관련 기술과 표준, 법률 등을 알기 쉽게 제시하여 마이데이터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얻으려는 목적 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마이데이터의 개념이나 원칙, 표준, 예시 등도 함께 제시하여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준비, 설계, 구축, 운영 단계에서 본 안내서를 폭넓게 참조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안내서는 서비스 동향, 정책 및 법제도의 변화, 기술의 발전, 인식의 확산과 더불어 계속 변화해갈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 확산할 수 있도록 본 안내서가 길잡이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 확인하세요!

- 마이데이터 서비스 안내서는 개인, 공공기관과 기업이 마이데이터의 개념과 원칙을 쉽게 이해하고 이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 본 안내서는 개인데이터를 수집 및 활용하고 있는 모든 분야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마이데이터의 핵심개념인 개인의 자기정보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권고사항을 제안합니다.
- 본 안내서는 2019년 12월 현행법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포함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자)은 동일한 용어(마이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으나 본 안내서와 목적과 범위가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안내서에 포함된 금융관련 정책사례는 금융 분야의 트렌드를 참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금융 분야 서비스 사례는 현행법 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서비스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과 관계가 없습니다.
- 본 안내서에서 정의한 공통 요구사항은 강제사항이 아니며 개인 중심의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고사항입니다.
- 향후 법제도 개정 및 정책 추진 방향 등에 따라 본 안내서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 **Հ**

부록. FAQ



---- 51

Part.	.01 배경 및 목적	05
	01. 마이데이터 추진 배경	
	02. 안내서 수립 목적	
Part.	.02 마이데이터 이해하기	09
	01. 마이데이터 개념 및 원칙	
	02. 개인데이터의 범위	
	03. 마이데이터와 동의	
	04. 마이데이터와 열람권	
	05. 개인의 권리	
Part.	.03 마이데이터 서비스 및 공통요구사항 적용 방안	19
	01. 마이데이터 서비스	
	1- ① 마이데이터 서비스 특징	
	1- ② 마이데이터 서비스 공통요구사항	
	1- ③ 마이데이터 서비스 기본 모델	
	02. 공통요구사항 적용 방안	
	2- ① 주요 내용	
	2- ② 알기 쉬운 동의	
	2- ③ 동의관리	
	2- ④ 개인데이터 내려받기	
	2- ⑤ 선별 공유 2- ⑥ 이용내역관리	

## Part.01 배경 및 목적

#### 01. 마이테이터 추진 배경 02. 만내서 수립 목적



전 세계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의 약 75%가 개인데이터인 현재, 기관(업)은 개인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비즈니스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데이터의 주인인 개인은 비즈니스 운영방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의 자기정보결정권을 강화하여 개인데이터 기반 비즈니스에서 개인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안내서는 국민,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이데이터 개념 및 원칙을 설명한다. 또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기획 단계부터 고려해야 하는 공통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을 제공하여 개인의 자기정보결정권이 보장되도록 한다.

### 미리보기

#### 개인데이터는 이미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지 않나요?

기존 개인데이터 활용 서비스의 경우 활용방식과 수익분배 등의 과정에서 개인이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협약된 기관(업) 간에만 개인데이터를 공유하여 새로운 서비스가 성장 하기 어려웠습니다. 개인의 데이터 주권 확보와 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해 마이데이터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 ● 안내서는 무엇을 제공하나요?

마이데이터의 개념 및 원칙을 제공합니다. 또한, 공공 및 민간기업이 마이데이터 서비스 구축 및 운영 시 서비스 가입부터 제공, 탈퇴까지 각 프로세스별 고려해야 하는 공통요구사항 적용 방안을 제공합니다.

#### ● 안내서는 왜 만들어 졌나요?

마이데이터가 생소한 국민,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에게 마이데이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구현 및 운영할 때 필요한 공통요구사항을 제공합니다.

#### 마이데이터를 통해 개인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개인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적극적으로 본인의 개인데이터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데이터 활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치가 개인에게도 분배됩니다.

#### ■ 세계 데이터 시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 데이터 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개인데이터 비중과 가치가 증가함



#### ■ 개인데이터는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

- 기관(업)은 개인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를 통해 개인 맞춤화 서비스 제공, 새로운 시장 발굴, 신 서비스 및 상품 개발 등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음
- 또한, 개인데이터 활용을 통해 사회 이슈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음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데이터 비식별화 사례집, 2014

#### ■ 하지만, 개인데이터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비즈니스에서 개인은 비즈니스 운영방식에 거의 참여하지 못함

■ 개인데이터를 제공하는 개인은 수집된 개인데이터 판매 및 활용 과정에서 적극적인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움

- 해외에서는 정부차원에서 개인의 개인데이터 주권 강화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이데이터 관련 정책을 활발하게 시행하면서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음
  - 특히, EU의 경우 일반개인데이터보호법(GDPR)을 제정하여 '개인데이터 이동권(Right to Data Portability)'을 보장하여 개인데이터 결정권을 강화함

#### 해외 마이데이터 정책추진 동향

미국 Smart Disclosure		의료(블루버튼), 에너지(그린버튼, 오렌지 버튼)
영국 Midata		금융, 통신 분야 등에서 활용
프랑스 Mesinfos		민간주도로 추진 블루버튼을 벤치마킹한 의료분야 프로젝트 추진 데이터이동권 보장을 위한 레인보우프로젝트 추진
핀란드 MyData		의료, 금융, 연구 분야 등에서 활용
일본	Information Banks	개인데이터 정보은행 도입
싱가포르 MyInfo		국민 디지털 아이디 SingPass 제공

- ▋ 우리나라는 2018년 6월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 발표 이후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산업자원통상부, 행정안전부 등이 각 분야별로 마이데이터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마이데이터 지원사업을 통해 기반 확보. 제공 확산. 서비스 다양화 등 추진
  - ① 본인정보 활용 기반 확보를 위한 활용 조사 및 연구
  - ② 전문가 혐의체 운영
  - ③-(1) 본인정보 제공 확산을 위한 실증 서비스 구축 지원 및 ③-(2) 서비스 컨설팅 지원
  - ④ 본인정보 활용 서비스 다양화를 위한 공모전·해커톤 및 홍보 등 인식제고 활동

#### ① 본인정보 활용조사

본인정보 활용현황. 수요조사



#### ② 혐의체 운영

분야별 전문가 활용 및 현의체 운영



#### ③ 실증서비스, 컨설팅

본인정보 보유기관 (5대분야, 8개기관) 실증서비스 및 컨설팅



\_\_ .;, ;;- . 제공환경구축

실증서비스 컨설팅 본인정보 내려 보기, 제3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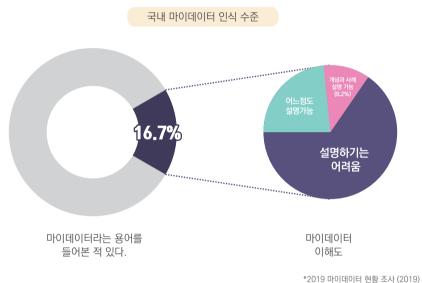
기술, 정책, 보안, 관리

#### ④ 인식제고

본인정보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해커톤 운영 및 홍보



- 다양한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마이데이터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마이데이터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기관(업) 대비 높지 않음
  - 마이데이터를 들어본 적이 있는 응답자는 약 16.7%이며, 그 중 약 8.2%만이 마이데이터 개념과 사례를 모두 설명할 수 있음
- 기관(업)의 경우 약 43.4%가 마이데이터를 알고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금융분야의 인지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본 안내서는 개인,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마이데이터 개념 및 원칙에 대한 이해와 인식수준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한 인식확산을 위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관(업)이 개인의 데이터 통제권을 서비스 내에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공통요구사항으로 권고함
  - 개인은 공통요구사항이 적용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자신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경험을 통해 마이데이터 개념을 체득할 수 있음
  -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준비하는 기관(업)에게 공통요구사항들을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마이데이터 서비스 준비 과정에 도움을 제공함
- ▋이를 통해. 마이데이터의 기본 가치인 개인의 자기결정권이 지켜지고. 그 필요성이 공유되는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

## Part.02 마이테이터 이해하기

- 01. 마이데이터 개념 및 원칙
- 02, 개인데이터의 범위
- 03. 마이테이터와 통의
- 04. 마이테이터와 열람권
- 05. 개인의 권리



마이데이터의 핵심은 개인이 자신의 개인데이터에 대한 관리와 통제 권한을 가지는 것이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개인데이터의 활용처 및 활용범위 등에 대해 능동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개인데이터 활용 체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이를 위해 기관(업)이 보유한 개인데이터를 제공받아야 하는데, 열람권을 기반으로 개인들이 자신의 데이터를 전자파일 형태로 받아서 활용할 수 있다. 개인들은 마이데이터 환경에서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인지하고 요구할 수 있어야 하며, 기관(업)들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 미리보기

마이데이터는 개인데이터를 지칭하는 새로운 용어인가요?

아닙니다. 마이데이터는 개인데이터의 활용과 관리의 권한이 정보주체인 개인에게 있음을 강조하는, 개인데이터 활용체계의 새로운 접근 법입니다. 따라서, 마이데이터 서비스란 마이 데이터 개념을 실현하는 개인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열람권은 홈페이지나 이메일로 알려주는 개인정보이용내역알림과 다른가요?

열람권은 기관(업)이 수집한 개인정보 내용과 처리내역을 조회하고 사본을 제공받을 수 있는 개인의 권리입니다. 개인정보이용내역알림은 알림 의무가 있는 기관(업)이 주기적으로 개인 정보 처리내역에 대한 내역을 알려주는 것으로 활용 가능한 개인데이터를 제공받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법제도에 데이터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데,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가능한가요?

데이터이동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 데이터의 적극적인 공유와 활용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 보장하는 개인 데이터 열람권 및 동의 기반 개인데이터 제공 등의 제도를 통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권리를 준수하지 않으면 법적인 처벌이 있나요?

마이데이터의 기본 철학인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권고사항입니다. 법적 처벌이나 제재가 있지는 않지만 건전한 마이데이터 생태계조성을 위해 준수해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 마이데이터는 개인의 자기정보결정권 확보와 데이터 경제 확성화 관점에서 논의됨
- 마이데이터의 핵심 개념은 개인의 데이터 주권인 자기정보결정권으로. 개인데이터의 활용과 관리에 대한 통제권을 개인이 가짐
- 개인을 중심으로 개인데이터를 구성하고, 자신의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
- 데이터 경제 관점에서는 대기업 중심의 개인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양적. 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협약된 기관(업) 간에만 가능했던 개인데이터 공유체계가 개방형태로 변화하여 스타트업들의 적극적 참여 및 새로운 서비스 모델이 등장할 수 있는 시장 조성
  - 기존 개인데이터 기반 수익구조에서 소외되어 있는 개인에게 명확한 이익을 제공하여 개인이 데이터 경제의 주요 이해관계자 역할 수행



개인이 개인데이터의 활용처 및 활용범위 등에 대해 능동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개인데이터 관리 및 활용체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 금융거래, 통신, 구매, 진료, 여행, SNS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생성되는 개인데이터에 대하여 개인들이 접근하고,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마이데이터의 목적
  - 개인의 동의를 기반으로 한 개인데이터 활용을 전제로 함
  - 개인을 중심으로 분야간 개인데이터의 융복합을 통한 가치창출 추구
  - 원활한 개인데이터 활용을 위한 상호운용성과 이동성 보장 필요

#### 기관(업) 중심 개인데이터 생태계

우리가 알아서 편한 서비스 제공할 테니 동의만 해주세요~ 대신에 다른 서비스로



옮기면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 마이데이터 생태계

내가 지정한 서비스로 내 정보를 보내주세요! 정보를 언제. 어떻게 썼는지도 확인할 거예요!





- (데이터이동권) 정보주체가 요청하는 경우 제3의 서비스로 기관(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전송해야 하는 권리로 국내법에는 데이터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음
-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본인신용정보 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본 안내서의 마이데이터 범위 중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금융 분야에 한정

■ 마이데이터 원칙은 개인데이터 통제, 제공, 활용이 개인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을 의미

## 01 데이터 권한

개인이 개인데이터의 접근, 이동, 활용 등에 대한 통제권 및 결정권을 가져야 함

## 02 데이터 제공

개인데이터를 보유한 기관(업)은 개인이 요구할 때. 개인데이터를 안전한 환경에서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제공하여야 함

## 03 데이터 활용

개인의 요청 및 승인(동의)에 의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과 제3자 접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그 활용 결과를 개인이 투명하게 알 수 있어야 함

▋ 마이데이터 적용 시 개인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항목 점검 필요

#### 마이데이터 체크리스트



- 01 개인데이터를 개인에게 돌려주는가?
- 02 개인이 자기 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가?



- 03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누구에게 제공할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가?
- 04 개인이 개인데이터 통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 05 개인이 개인데이터 활용 결과를 투명하게 알 수 있는가?
- 06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활용하여 발생한 혜택을 가져가는가?

#### ▮ 마이데이터에서 다루는 개인데이터는 개인데이터 보호 관점보다 포괄적인 범위에서 논의

■ 개인에 관한 데이터뿐 아니라, 개인이 직접 혹은 개인의 활동으로 생산된 데이터, 개인이 포함된 기록데이터, 개인데이터를 분석하여 생성된 데이터도 개인데이터에 포함(WEF, 2014)

구분	설명	예시
개인 속성 데이터 (Personal Attribute Data)	개인을 설명할 수 있는 데이터로 가장 일반적인 개인데이터 범위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학력, 직업 등
자발적 데이터 (Volunteered Data)	개인에 의해 생성되고 개인의 의지로 공유한 데이터	핸드폰번호, 사진, 이메일, 온라인 거래내역, 블로그 컨텐츠, SNS 컨텐츠, 가입 및 등록신청서 등
관찰된 데이터 (Observed Data)	개인의 활동이 기록되어 수집된 데이터	인터넷 접속 내역, CCTV, 위치데이터 등
추론된 데이터 (Inferred Data)	속성, 자발적, 관찰된 데이터 등을 분석하여 도출한 데이터	개인신용평가점수, 구매패턴분석, 맞춤형 정보제공을 위한 프로파일링 등



#### ※ 국내외 현행법 상 개인정보 범위

구분	개인정보정의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의미
정보통신망법 제2조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의미
신용정보법 제2조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 중 개인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특정 신용정보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신용정보 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신용정보 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그 외 유사 정보로 구분
GDPR 제4조	"개인정보"는 식별되거나 식별 가능한 자연인(데이터 주체)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의미한다. 식별 가능한 자연인은 이름, 식별 번호, 위치 데이터, 온라인 식별자 뿐 아니라 신체적, 생리학적, 정신적, 유전적, 감정적, 경제적, 문화적 또는 사회적 정체성 중 하나 이상의 요소를 참조하여 직간접적으로 식별 가능한 사람을 뜻함



#### ※ WEF에서 정의한 개인데이터 분류체계

●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에서는 개인데이터 분류체계를 신원정보, 자산정보부터 상황 및 관계정보까지 포함하여 제시

유형	개인정보 항목	
	인구통계	나이, 성별, 주소, 직업
신원정보	신원확인	이름, 사용자 이름, 휴대폰번호, 별명, 성격, 장치ID (IP주소, 블루투스ID, SSID, IMEI, SIM)
	관심사항	신고내역, 좋은 것, 마음에 드는 것, 선호하는 것
	가상 재화	식별자(도메인 이름, 소셜계정), 가상물품, 디지털 기프트, 가상통화
자산정보	금융정보	소득, 지출, 거래내역, 계좌, 세금정보, 자산, 부채, 보험, 신용등급
	물리적 재화	부동산, 차량, 개인소지품, 예술품, 기기
	위치	현재위치, 계획된 미래위치, 과거위치
사하저너	사람	공존하는 사람(현실, 디지털), 상호작용하는 사람
상황정보	이벤트	달력정보, 웹서비스 이벤트 정보
	물건	공존하는 물건(현실, 디지털), 상호작용하는 물건
컨텐츠	개인문서	워드, 스프레드 시트, 프로젝트 계획, 프레젠테이션
11번스	소비매체	책, 사진, 비디오, 팟캐스트, 음악, 오디오북, 게임, 소프트웨어/앱
	브라우저	클릭, 키누르기, 방문페이지, 조회, 즐겨찾기
활동	클라이언트 앱	-
20	물리적 세계	먹기, 마시기, 운전, 쇼핑, 수면
	운영체계	-
	존재	유효성, 채널
커뮤니케이션	글	문자, 인스턴트 메시지/채팅, 전자메일(첨부자료, 내용), 상태업데이트
기뉴니게이언	소셜미디어	비디오, 팟캐스트, 사진, 공유(음악, 링크, 즐겨찾기)
	담화	음성전화, 보이스메일
	보험정보	청구내역, 지불내역, 보장범위
건강정보	개인정보	추적장치, 활동기록, 유전자 코드
	환자정보	처방전, 진단서, 기기로그, 검사정보
	시민권	-
정부기록	기관(업) 이사회	-
0T/15	법집행 기록	-
	공공기록물	법적 이름, 생일, 사망, 결혼, 이혼, 소유자산
e-포트폴리오	학술기록	시험, 학생프로젝트, 성적, 학위
5 ㅗㅡᆯ니소	고용	리뷰, 활동, 승진, 지속적 교육
	연락처	주소록, 의사소통(통화 기록, 메시지 기록)
관계정보	소셜네트워크	-
	가계도	-

- ▋ 동의는 개인데이터의 주인인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활용해도 좋다는 승인의사를 표현 하는 것으로 개인 중심의 개인데이터 활용에 대한 허가를 받는 가장 필수적인 절차
  -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도 개인데이터 수집, 이용, 제공 시 개인의 동의를 기반으로 하도록 명시
  - GDPR은 개정 전보다 강화된 동의조건을 제시하여 개인의 통제권과 선택권 보장
- 개인데이터의 이동과 활용이 활성화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생태계에서 개인의 통제권을 보장하면서 개인데이터 활용의 허가서로 통용될 수 있는 동의의 중요성 증대
  - 개인데이터 활용 승인과 동일한 의미인 동의는 서비스 간 개인데이터 공유 시 상호호환 가능한 형태로 관리되어야 함
  - 특히, 제3자가 개인데이터 활용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데이터 보유자는 개인 본인이 제시한 동의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제3자의 개인데이터 접근을 허용



#### ※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에서의 동의의 의미와 획득 방식

GDPR은 개인정보의 보호와 EU 역내에서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으로, 개정 전보다 정보주체의 권리를 확대 및 강화하였음. 그중 동의는 GDPR의 주요 원칙 중 하나로 정보주체의 통제권과 선택권을 보장 하기 위해 개정 전보다 강화된 동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음

#### ○ 동의란?

정보주체가 진술하거나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자신의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긍정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것

#### ○ 유효한 동의의 조건

- -자유롭게 부여된 동의: 정보주체에게 강압이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상태로 동의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져야 하며, 컨트롤러는 정보주체가 불이익 없이 동의를 거부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함
- -개별적으로 특정한 동의: 개인정보 처리 목적을 사전에 명확하게 정의하고, 여러 개의 목적에 대해 각각에 대한 정보를 분리하여 제공한 뒤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 함
- -사전 정보가 제공된 동의: 정보주체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동의의 의미,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정보제공 시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한 형태로 제시되어야 함
- -정보주체의 명확한 의사 표시 : 동의는 개인정보 처리 전 획득되어야 하며(opt-in) 다음과 같은 명확한 긍정적인 행위가 있어야 함

(불인정 사례: 사전에 선택된 체크박스 제시, 암묵적 동의, 이용약관에 포괄적 수용 의사 표시 등)

#### ○ 명시적 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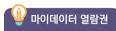
- -정보주체가 서면진술, 동의 의사가 표명된 이메일 발송, 정보주체의 서명이 포함된 문서의 스캔본 업로드, 전자서명, 동의에 대한 2단계 검증을 통해 명확한 의사 표시를 하는 것
- -민감정보처리, 역외 이전 시 특정 상황에 대한 예외 조항,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의사결정 등에 해당하는 경우 명시적 동의 필요

#### 동의철회

컨트롤러는 정보주체가 동의를 획득한 행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어야 함

\*출처: 우리 기관(업)을 위한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가이드북, 한국인터넷진흥원, 2018

- ▋ 개인은 정보주체의 권리 중 하나로 기관(업)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데이터와 처리정보에 대한 열람 및 사본을 요청할 수 있는 열람권을 가짐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의료법에 모두 열람권이 보장되어 있으며, 개인의 열람 요청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관(업)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함



기관(업)이 보유한 개인데이터와 처리내역을 개인이 조회하고 사본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본 권리를 근거로 자신의 개인데이터를 확보하여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음

- ▮ 열람권은 이동권 법제화와 별도로 현행법 내에서 개인의 의지에 따라 개인데이터를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38조 1항)과 의료법(제21조 3항)은 대리인을 지정하여 개인정보 열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함

관련법령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1조	개인이 직접 제공, 제3자에게 수집, 서비스제공자가 생산, 서비스 이용 중 자동생성된 데이터 등
정보통신망법 제30조	(1)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가지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2)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 (3)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한 현황
신용정보법 제35조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한 경우) 이용 주체, 이용 목적, 이용 날짜, 이용한 신용정보의 내용,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 주체, 제공받은 자, 제공 목적, 제공한 날짜, 제공한 신용정보의 내용, 제공받은 자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의료법 제21조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기재, 수정된 경우 추가기재, 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 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

- 하지만, 열람 및 사본 요청 시 기관(업)들이 개인데이터를 전자파일로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낮으므로 열람권 현실화 및 활성화 필요
-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개인정보 열람·제공 요구 등 정보주체 권리 보장 강화(정보통신망법 제30조 관련)
  - 개인정보 열람·제공 요구를 쉽게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상의 메뉴 및 시스템 운영 권장
  - 사업자는 열람·제공 요구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회신해야 하며, 자료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실비범위에서 사업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우송료 청구 가능



#### ※ 개인정보 열람 형태 및 방법

● 개인정보보호법 및 하위법령에서 제시하는 개인정보 열람권은 **사본의 발급을 포함**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열람 형태 및 방법은 **전자파일의 제공과 전자우편을 이용한 열람을 포함**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며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
  -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 · 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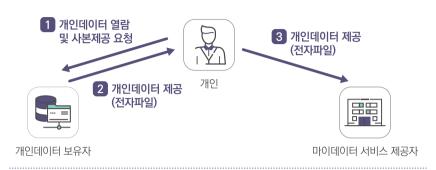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규칙

[별지 제9호 서식]

수신자 (우편	번호: , 주소: )	
요구 내용		
열람 일시	열람 장소	_
통지 내용 ([]] 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림거절)		
열람 형태 및 방법	열람 형태 [ ]열람·시청 [ ]사본·출력물 [ ]전자파일 [ ]목제물·인화물 [ ]기타 열람 방법 [ ]직집방문 [ ]우편 [ ]팩스 [ ]전자무편 [ ]기타	_
납부 금액	①수수료 <sub>원</sub> ②우송료 <sub>원</sub> 계(①+②) 수수료 산정 명세	
사 유		

#### ■ 개인은 열람권을 직접 혹은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음

#### 열람권 기반 개인데이터 이동





# 참고

#### ※ 해외 열람권 보장 제도

**GDPR** 

열람권을 통해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사실을 확인하고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보장

- -열람 요구 시 1개월 이내에 사본을 무료로 제공해야 하며, 정보주체의 요구가 전자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면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자적 형태로 제공
- -정보주체가 원거리에서도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의 방법 권고

미국 스마트공시

오바마 정부는 스마트공시를 통해 개인데이터에 쉽게 접근하고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11.9)

- -스마트공시 대상 중 소비자에 대한 개인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경우, 정보주체인 개인이 선택한 대상에게만 안전한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지원
- -헬스케어, 교육, 금융, 통신 등의 분야에서 실행되고 있으며 건강보험이동 및 책임법(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le Act, HIPAA)은 자신의 진료기록을 요청하는 환자에게 전자사본 제공 의무화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데이터브로커(Data broker) 사업자가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해 소비자의 접근권 및 정정권 권고(14.5)

17

- 마이데이터 환경은 개인을 중심으로 개인데이터의 관리와 활용이 실행되고,이 과정에서 개인은 데이터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가짐
-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기관(업)이지만 개인데이터가 수집 및 활용되는 과정은 개인의 의사결정에서부터 시작되며, 개인데이터를 어떻게 이용했는지 개인이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
- 마이데이터 개념과 원칙에 기반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시 개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음





- 01 기관(업)이 보유한 내 데이터와 처리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 02 기관(업)이 보유한 내 데이터의 사본을 전자파일로 받을 수 있어요

개인에 의한

- 03 내 동의나 요청이 있어야 개인데이터를 수집하거나 활용할 수 있어요
- 04 내 데이터를 내가 선택한 서비스로 보낼 수 있어요

개인을

- 05 기관(업)이 내 데이터를 어떻게 썼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 06 내 데이터를 제공하면 나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개인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업)들은 마이데이터 환경에서도 개인데이터 공유보다는 자사의 플랫폼으로 더 많은 개인데이터를 확보하여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함
- 하지만 기관(업)에 대한 개인의 지속적인 권리행사와 사본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고객인 개인의 요구를 만족하기 위해 변화할 것으로 예상
- 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기관(업)에 요구 시 원활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제도정비 및 정부 차원의 계도가 병행되어야 함

## Part<sub>-</sub>03 아이테이터 서비스 및 공통요구사항 적용 밝안

#### 01. 마이테이터 서비스

- 1-① 서비스 특징
- 1-② 공통요구사항
- 1-③ 서비스 기본 모델

#### 02. 공통묘구사항 적용 방안

- 2-① 주요 내용
- 2-② 알기 쉬운 동의
- 2-③ 동의관리
- 2-④ 개인데이터 내려받기
- 2-⑤ 선별 공유
- 2-⑥ 이용내역관리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마이데이터 원칙에 의해 제공되는 개인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의미한다. 마이데이터 서비 스는 투명성, 신뢰성, 통제권, 가치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마이데이터 서비스 공통요구사항을 준수 해야 하며, 마이데이터 서비스 모델을 통해 개인데이터 흐름과 공통요구사항 적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본 안내서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구현 시 필요한 공통 요구사항으로 알기 쉬운 동의, 개인데이터 내려받기, 선별 공유, 동의관리, 이용내역관리를 권고한다.

공통요구사항은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서비스 기능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각 공통요구 사항별로 핵심내용. 기존 방식과 달라진 점. 권고사항. 국내외 사례, 구현예시, 참고해야 하는 법 조항 등을 통해 서비스 구현 시 적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 미리보기

#### ◉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기존 개인데이터 활용 서비스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활용하는 과정에 최대한 참여하고, 서비스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데이터를 확인 및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안내서에서는 선별적 동의관리, 데이터영수증, 다운로드 등을 제공하도록 권고합니다.

#### 공통요구사항은 언제 적용해야 하나요?

공통요구사항은 개인데이터의 수집, 관리, 활용. 제공 등의 전반적인 프로세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통요구사항은 서비스 기획 단계 부터 함께 고려해서 설계와 개발까지 진행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 ◉ 공통요구사항을 적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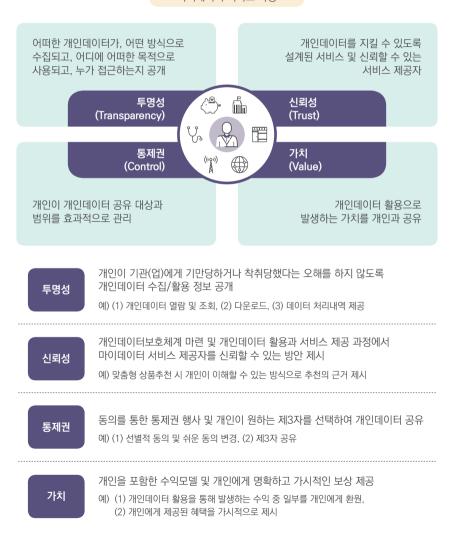
개인들은 공통요구사항이 적용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자연스럽게 개인데이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경험으로 체득할 수 있습니다. 기관(업)은 데이터이동권 없이도 개인의 동의 하에 개인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 권고사항을 그대로 적용해야 하나요?

공통요구사항은 어떤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 하느냐에 따라 우선순위나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요구사항의 취지를 이해하고, 각 서비스에 적합한 방식으로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 Part.02
- 마이데이터의 개념적인 의미와 원칙은 서비스를 통해 실체를 가지게 되며, 개인들도 서비스를 통해 달라진 개인데이터 패러다임 경험 가능
  -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특정한 목적과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이데이터 원칙 하에서 개인데이터를 기반으로 영위하는 모든 유형의 서비스를 포함
  -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개인데이터의 제공자이자 서비스의 사용자인 개인을 중심으로 구현되어야 하며, 개인데이터의 수집 및 이용뿐 아니라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도 개인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함
-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투명성, 신뢰성, 통제권, 가치 관점에서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며, 이와 같은 특징들이 기존 개인데이터 기반 서비스와 차별화되는 지점임

#### 마이데이터 서비스 특징



#### ■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마이데이터답게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공통요구사항 적용을 권고함

- 공통요구사항은 개인의 자기정보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데이터가 원활하게 흐르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
- 개인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전에 서비스 기획단계부터 공통요구사항 적용 방안을 함께 고려하는 접근법으로 전환



서비스를 기획하는 시점부터 마이데이터 개념을 고려하여 설계 및 개발을 진행하는 것으로, 마이데이터를 서비스의 부가적인 기능이 아닌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원칙으로 인식

#### ■ 공통요구사항은 동의, 제공, 이용내역관리 등 개인데이터 활용 프로세스별로 제시

- (동의) 이해하기 쉬운 동의와 서비스 이용 중 신규동의, 동의 철회 등이 가능한 동의관리 지원
- (제공) 내려받기는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다운로드 받거나 제3자에게 전송할 수 있어야 하며, 서비스 간 직접적인 개인데이터 공유를 지원해야 함
- (이용내역관리) 동의 및 데이터영수증은 개인데이터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이력정보를 영수증 형태로 제공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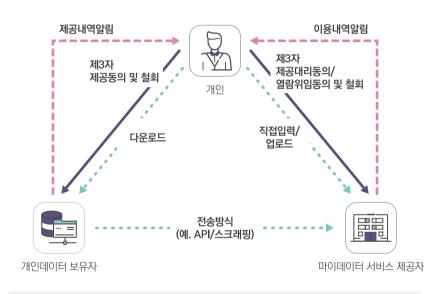
주요요건	설명
알기 쉬운 동의	개인은 자신의 정보가 활용되는 목적, 기관, 범위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동의서를 제공받아야 하며, 활용 목적, 기관, 범위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함
동의관리	개인은 서비스 이용 중 언제라도 쉽고 편한 방식으로 동의내역을 변경(신규동의, 철회, 재동의)할 수 있어야 함
개인데이터 내려받기	-개인은 서비스에 저장되어 있는 자신의 정보를 기계가독형 형태로 다운로드할 수 있어야 함 -다운로드 방식은 디바이스로 내려받기와 메일, 메신저 등을 통한 전송을 포함함 (포맷, 항목, 기간 선택 가능)
선별공유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이 지정한 제3의 서비스로 개인이 지정한 범위의 개인데이터를 기계가독형 형태로 전송해야 함
이용내역관리	-개인은 개인데이터 수집 및 이용(동의, 내려받기, 공유 등)에 관한 내역을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동의, 활용(수집/이용, 내려받기, 공유 등)에 대한 건별 상세내용이 담긴 영수증을 제공해야 함

#### ■ 마이데이터 서비스 모델은 이해관계자간 개인데이터의 흐름과 공통요구사항을 포함

- 본 모델은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기본 개념을 표현한 것으로 개인데이터 제공 및 활용이 개인을 중심으로 실행되는 것이 핵심임
- 동의를 획득하는 방식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법을 근거로 제시함

#### ■ 개인데이터 제공과 활용은 역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의 기관(업)이 제공과 활용의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음

#### 마이데이터 서비스 기본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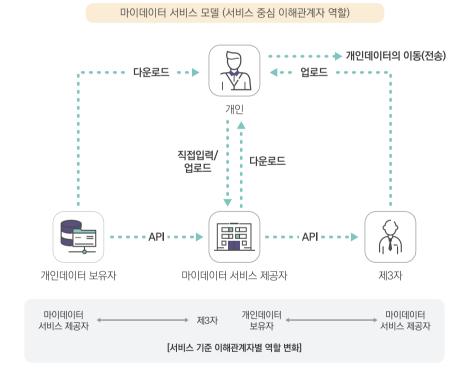
승인/철회 등 개인데이터 이용에 대한 개인의 명시적인 의사
 ・・・ ▶ 개인데이터의 이동(전송)
 개인데이터의 이용 및 전송 현황 알림

주요요건	설명	
개인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당사자로 개인데이터로 식별 가능하고, 해당 개인데이터의 주체이면서 통제권을 가진 사람	
개인데이터 보유자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자가 활용하는 개인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업)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자	개인데이터를 수집/이용하여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개인, 기업, 기관	

- 이해관계자는 개인데이터를 제공하느냐, 활용하느냐에 따라 여러 역할을 가지게 되므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중심으로 각 기관의 역할을 구분함
-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계약의 당사자인 개인과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자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개인데이터 보유자와 개인데이터를 공유 받는 제3자까지 정의

#### ▮ 제3자란

- 개인의 요청 및 동의에 의거하여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한 개인데이터를 제공받아 제휴서비스나 독립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업)
- 개인의 요청에 따라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한 개인데이터를 공유받는 개인



#### ■ 서비스를 기준으로 이해관계자 역할을 정의하게 되면 하나의 기관(업)이 개인데이터 보유자,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자, 제3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자는 특정 서비스의 제공 당사자로 역할을 하게 되며, 제3자의 서비스를 기준으로 모델을 작성하게되면 개인데이터 보유자가 됨
-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개인데이터 저장소와 같은 특정한 서비스 유형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므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업)은 누구나 자사의 서비스를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 모델을 수립할 수 있음

- 각 마이데이터 서비스별로 개인데이터흐름과 공통요구사항 적용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자를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 기본 모델을 정의함
  - 이해관계자는 개인, 개인데이터 보유자,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자, 제3자(서비스제휴, 독립서비스), 개인이 지정한 제3자 등으로 정의함
  - 이해관계자는 개인데이터 이동 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동의 확보 필요성을 기준으로 분리함 (예) 서비스운영대행기관(업)이 해당 업무를 위해 개인데이터 제3자제공동의를 통해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3자(서비스운영대행)로 분류
  - 동의 및 동의철회는 개인과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자 간에 발생하며, 현행법 상 개인데이터 이동 시 받아야 하는 동의 유형을 이해관계자 유형 별로 표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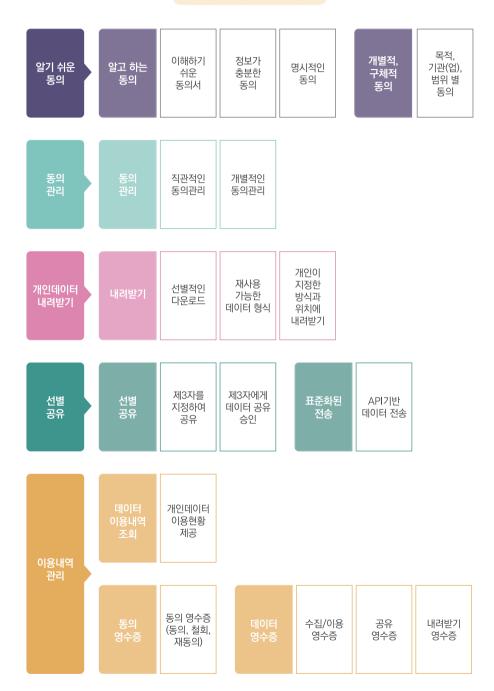


### ■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자는 기본 모델을 이용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대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모델을 정의하여 개인데이터의 흐름과 공통요구사항 적용 현황을 검토할 수 있음

- 각 비즈니스모델에 따라 다른 형태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모델이 수립됨
- 개인데이터 보유자 및 제3자와의 관계가 복잡한 비즈니스모델에 대해 마이데이터 서비스 모델을 통해 개인데이터관리 현황의 전체 상황을 확인할 수 있음

#### ■ 본 안내서에서 권고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공통요구사항별 세부 항목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공통요구사항별 주요 내용



#### 무엇이 중요한가요?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자가 <u>개인데이터 활용에 대한 정보를 인지한 상태</u>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가 충분한 동의서** 구성

핵심내용고지

동의서별 제목만 보고 선택하지 않도록 핵심내용을 요약하여 제시

직관적 표현

개인데이터 수집, 이용, 제공의 목적, 항목, 활용기관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제시 (그림, 표등 이용)

쉬운 용어 사용

개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표현으로 동의서 작성

주의사항 제시

동의여부에 따라 개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정보 제공 (동의거부 시 불이익, 동의 시 이용 가능한 추가 서비스, 후속 조치 등)

#### 무엇이 다른가요?

#### 현행 동의서

마이데이터

제도 준수 중심

주요 특징

정보 제공 중심

법률용어, 전문용어 사용

용어 및 표현

누구나 이해 가능한 용어와 표현

동의서 제목만 보고 동의여부 선택

동의내용인지

개인데이터 활용 목적과 기관을 명확히 파악하고 동의

동의결과가 개인에게 주는 영향에 대한 정보 제공 미흡

동의 영향

동의여부에 따라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 인지

#### [사례: 금융위원회의 정보보호 내실화 방안 中 정보활용 동의제도 실질화]

정보활용 동의제도를 개선하여 개인데이터 활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알고 하는 동의(informed consent) 여건 마련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책임과 개인정보보호 노력 유도

주요내용

정보활용 동의서의 단순화, 시각화

개인데이터 활용 관련 요약 정보 제공

동의서 등급제 도입

#### 무엇이 중요한가요?

##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활용하는 목적과 기관(업)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동의서 구성



#### [구체적, 개별적 동의 대상]

개인데이터 활용 목적

부가서비스, 상품개발, 마케팅 및 이벤트, 연구 등 선택

개인데이터 제공 기관(업)

제3자제공동의 대상기관(업) 선택

개인데이터 범위

개인데이터 중 이용 및 제공에 동의하는 범위만 선택

#### 무엇이 다른가요?

#### 현행 개인데이터 동의

#### 주요 특징

#### 마이데이터

동의서 별 일괄 획득

.....

тт ¬ с

동의대상 세분화

필수/선택 구분하여 선택영역에 대한 의사 표현

개별 동의 수준

선택 동의서의 세부사항에 대한 의사 표현 가능

동의서 단위로 의사 표현 (수집/이용, 제3자제공, 위탁 등)

개별 동의 대상

동의서 내에서도 목적, 기관(업), 항목별 선택 가능

개인데이터수집 및 활용 방식에 따라 동의서 분리

동의서 유형

필요 시 목적별, 제공기관(업)별 동의서로 분리 가능

#### [개인의 권리보호와 사용자 편의성]

개별적인 선택을 원하지 않는 경우 포괄적인 선택이 가능한 것처럼, 개인이 개인데이터 활용 목적과 기관(업)에 대한 동의선택권이 있음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사용자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동의서 구성 및 절차를 어떻게 디자인하는지가 중요하며,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권고사항

	-이해하기 쉬운 동의서 및 개별적 동의는 개인이 개인데이터 활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자신의 동의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이 목적
동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은 자신의 정보가 활용되는 목적, 기관(업), 범위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동의서를 제공받아야 함
정보가 충분한 동의	-동의 선택 시 전문을 확인하지 않아도 동의하는 내용의 핵심정보를 인지할 수 있는 설명을 함께 제공 *개인이 동의서 제목만 보고 선택하지 않도록 요약 정보 설명 요약정보예시 : 목적, 정보의 범위, 주의사항 -개인의 권리보호가 사용자 편의성을 해치지 않도록 동의절차를 디자인하고, 시각적 도구를 활용 *개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복잡하고 번거롭지 않게 제공할 수 있도록 동의서 구성 및 동의절차를 마련 *이해하기 쉬운 기호, 그림 등을 통해 직관적인 이해 돕기
개별적 동의 항목 구성	-개인데이터 동의 중 '선택 동의' 영역에 대한 목적별, 기관(업)별 동의 의사 확인  -기존 동의서에 추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동의서 구성 방식이 달라지는 것  -동의서 구성을 위한 개인데이터 구조화 *수집/이용: 목적별 동의 *제3자 제공: 목적별 동의(수집, 제공도 분리), 기관(업)별 동의, 개인데이터 범위  -개인데이터 항목은 목적 및 기관(업)별 선택 이외에 필요성이 있는 경우선택하도록 구성 *정보은행처럼 개인을 대신하여 개인데이터를 공유 및 전송하는 서비스의 경우는 개인이 개인데이터 범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 *컬럼보다는 의미를 가지는 정보 단위로 구성(ex. 계좌목록, 거래내역)
명시적 동의	-개인이 동의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동의함과 동의하지않음에 대한 선택지를 분리하여 제시 *개인이 클릭하는 버튼에 동의/동의안함을 분리하여 표시

#### 사례

#### 핀란드 마이데이터의 목적별 동의

○ 개인데이터 활용 목적을 5가지로 구분하여 시각화된 아이콘으로 표현



Core Service

중심 서비스 이용



Improved Service 향상된 서비스 이용



Marketing

마케팅 목적 활용



3rd Party Sharing 제3자 제공



Research

연구 목적 활용

#### P사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동의서

● 제3자에게 제공되는 개인데이터 범위에 대한 선택권과 각 동의정보에 대한 설명 제시



#### 참고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2조 3항

○ 정보주체에게 동의 또는 동의 거부를 선택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알려야 함

#### 온라인 개인정보처리 가이드라인('1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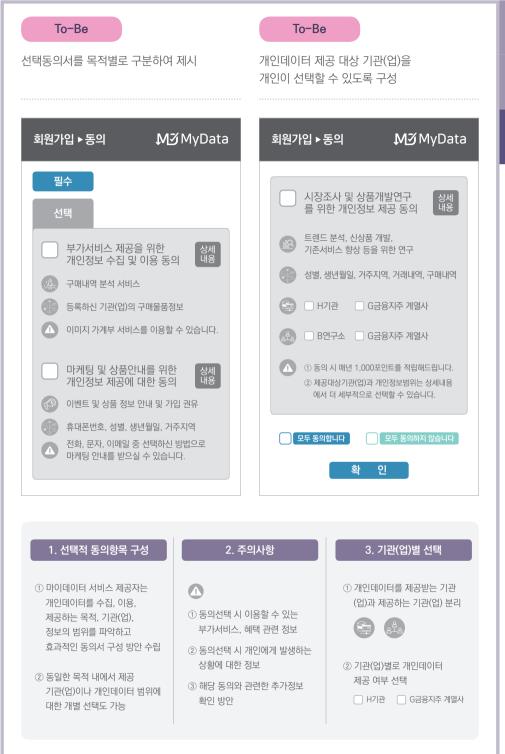
- 이해하기 쉬운 동의서 작성 기준 제시
  - -법정 고지사항만 간결하게 고지
  - -쉬운용어, 그림, 표, 강조표시 등을 사용하여 동의서를 읽기 쉽게 개선
  - -필수동의와 선택동의를 구분하고, 동의내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표시

####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

- 버튼에 동의한다는 행위 명시
- 동의하지 않음 옵션 제공
- 동의함/동의하지 않음 옵션을 구분하기 쉽게 표현

####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내실화 방안('18.5)

- 동의서 단순화, 동의서 등급제, 이용목적별, 기관(업)별 구분하여 동의
- 개정된 동의서 양식(案) 제시



#### 무엇이 중요한가요?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내에서 실시간으로 개인데이터 활용 동의의사를 확인하고 변경(동의, 철회, 재동의)



쉬운 철회

동의 철회 방법은 개인데이터 수집방법 보다 쉬운 방법으로 제공 (정보통신망법 제30조제6항)

실시간 관리

개인이 동의, 철회, 재동의 등의 동의의사를 실시간으로 변경하도록 지원

전체동의철회

모든 동의 철회(회원탈퇴) 기능 제공

#### 무엇이 다른가요?

#### 현행 동의관리

#### 기관(업) 중심 관리

#### 주요 특징

## 마이데이터

개인이 직접 관리

서비스내 변경은 일부 서비스에서만 지원 (대부분 별도의 방법으로 동의상태 변경)

동의관리방식

개인에게 동의상태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관리 권한 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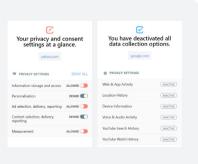
필수동의에 대한 동의철회 기능은 대부분 제공하지 않음

전체동의철회

전체 동의철회 시 서비스탈퇴 단계로 연결

#### [사례: 영국 re:consent]

-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웹사이트의 동의내역을 확인하고 쉽고 빠르게 변경할 수 있는 오픈소스서비스
- 구글크롬이나 모질라 파이어폭스에 확장프로그램으로 설치되며, URL 옆의 아이콘을 통해 데이터 수집 상태 확인 가능 (모든 데이터 수집옵션을 비활성화하는 경우 파란색 체크표시가 나타남)



#### 권고사항

#### -개인은 서비스 가입 시 제시한 동의의사를 서비스 이용 중 어느 때라도 개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할 수 있어야 함

#### 직관적인 동의관리

- -구체적, 개별적 동의방식이 동의관리에서도 유지되어야 함
- -동의관리 핵심은 직관적인 표현으로, 개인이 한 눈에 전반적인 동의상태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함
- \*직관적 표현은 향후 제3자 공유 시 이해관계자들이 개인데이터 공유조건을 같은 관점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이 됨

#### 현행 기준 동의관리

- -현행 동의획득 방식 하에서도 동의관리 기능 제공 가능
- \*일부 서비스에서 선택적 동의 항목에 대해 동의변경이 가능한 기능 제공 중 (개인이 상품정보 안내수단을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



\*출처 : Liiv Mate

#### **PDS** 서비스와 동의관리

- -PDS와 같이 개인데이터 공유가 핵심인 서비스일 경우 공유 대상 사람 및 기관(업)별로 동의조건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개인의 동의 하에 개인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므로, 데이터이동권 법제화 이전에도 서비스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개인데이터 통제권 관점에서 동의관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매우 높음

#### 참고

####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6항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동의의 철회를 요구하는 방법을 개인정보의 수집방법보다 쉽게 하여야 함

신용정보법 제37조 제1항.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 정보주체의 '제3자 제공 동의' 철회 방안
  - -정보주체는 동의철회의 대상 및 내용 등을 특정하여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선 통신, 서면, 사무실·점포 방문을 통한 동의철회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동의 철회 가능
  - -정보주체는 동의 .철회 시 그 용역의 제공을 받지 아니할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함

**M沙** MyData

<u>상세</u> S N

#### To-Be

전체 동의상태를 확인하고, 동의의사를 변경할 수 있도록 구성

#### To-Be

전체 동의 철회 시 서비스 탈퇴로 연결되도록 구성

내정보관리 ▶동의관리

A카드사에 포인트적립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

▼ 포인트 적립 필수 정보(휴대폰번호, 걸음 수)

□ 포인트 추가적립이 가능한 정보 (신장, 체중, 수면시간)

#### 내정보관리 ▶동의관리 **M沙** MyData

####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상세

Y N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동의일: 2019년 11월 1일

상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동의일 : 2019년 11월 20일

<u>상세</u> Y N

마케팅 및 상품안내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동의일: 2019년 11월 1일

<u>상세</u> Y N

시장조사 및 상품개발연구 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 <u>상세</u> S N

✓ H기관
□ B연구소

✓ G금융그룹

동의일 : 2019년 11월 1일

### 모든 항목에 동의합니다.

거래내역정보

동의일: 2019년 11월 1일



모든 항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시는 경우 서비스 탈퇴 메뉴로 연결됩니다.

#### 1. 동의상태 정보 제공

- ① 개인의 동의상태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요약정보 제공
- ② 동의상태 제공 시 개인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통일된 시각적 도구 이용

동의

- 일부동의

#### 2. 동의철회가 더 쉬운 방식

- ① 동의, 철회, 재동의를 편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
- ② 동의보다 철회가 쉬운 방식으로 구성 (예) 스와이프 방식일 경우 오른쪽으로 쓸어넘기는 것이 철회를 의미하도록 정의

#### 3. 모든 동의 철회

- ① 필수 동의를 포함한 모든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방안 제공
- ② 모든 동의 철회는 서비스 탈퇴를 의미한다는 내용 안내

#### 무엇이 중요한가요?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자가 <u>자신의 정보를 보관, 확인, 재활용하기 위해</u> 기계가독형 혹은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형식의 파일로 저장하는 것

선택하여 내려받기

내려받을 정보의 범위, 기간, 유형 등을 개인이 선택하여 내려받도록 지원

다양한 방식 지원

디바이스에 저장하는 방식 외에 이메일 및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내보낼 수 있도록 지원

기계가독형 데이터제공 재사용 가능한 기계가독형으로 제공하되, 사람이 읽을 수 있는(human-readable) 형식을 포함하여 지원

접근성 보장

내려받기 메뉴에 쉽게 접근하고, 다양한 데이터 확보 방식 지원











#### 무엇이 다른가요?

현행 개인데이터 열람

기관(업)만 개인데이터 보유

주요 특징

개인도 데이터 저장

마이데이터

기관(업)별 개인정보 열람요청절차 (서면, 전화, 이메일 등) 개인데이터 제공요청 다운로드 기능을 이용하여 개인이 원할 때 직접 다운로드

기관(업)이 제공하고자 하는 형태로 제공

개인데이터 제공방식 기계가독형 형태 중 개인이 필요한 유형 선택

#### [사례: 미국의 개인데이터 다운로드 정책 - 버튼(Button)]

분야별로 통일된 명칭과 버튼이미지를 제공하여 누구나 직관적으로 인지하고, 쉽게 다운로드





진료 및 건강정보 등





에너지 사용정보





출석, 성적, 일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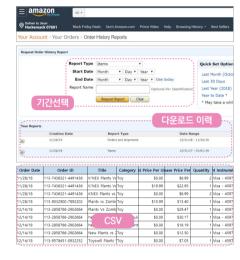
### 권고사항

열람권과 개인데이터 내려받기	-개인데이터 내려받기는 개인의 열람권을 보장하는 기능으로, 개인이 필요한 때에 전자파일 형태의 개인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의료법은 모두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한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이 열람 및 사본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인 열람권이 보장되어 있으나 활용성 저하 *열람 요청절차가 번거롭고, 개인의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하게 되어있어 개인데이터를 제공받더라도 활용성이 낮음 *개인정보 사본에 대해서도 기계가독형의 전자파일로 제공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없는 상황  -열람 대상 개인정보는 개인이 직접 제공, 제3자에게 수집,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자가 생산, 서비스 이용 중 자동생성된 데이터 포함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필요한 데이터만 내려받기	-목적에 따라 필요한 개인데이터의 범위나 형식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인이 필요한 방식으로 개인데이터 내려받기 지원(기간, 항목, 형식 등)  -서비스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선택 유형 구성  *서비스 규모, 데이터 범위 등에 따라 기간 선택부터 데이터별 형식까지 개인데이터 내려받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며, 내려받는 개인데이터를 재사용할 수 있느냐가 관건  -데이터형식의 경우 해당 서비스에서 탈퇴하더라도 특별한 도구없이 개인이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을 포함하여 제공하도록 권고
다양한 내려받기 방식	-누구나 서비스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 저장할 수 있는 쉽고, 간편한 방식 지향 -휴대폰이나 PC로 다운로드하는 방식 외에도 이메일 및 메신저를 이용한 전송, 클라우드 저장소 서비스 등으로 바로 전송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제공

#### 사례

#### 아마존 구매내역 다운로드

○ 아마존은 3년간 구매내역을 CSV 파일로 다운로드 지원



#### 구글 내 데이터 다운로드(takeout)

○ 구글은 자사의 모든 서비스에 축적된 개인데이터 다운로드 지원

← 내 데이터 다운로드



#### 참고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등

- 개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과 사본 교부 요청 가능
  - -개인이 직접 제공한 정보, 제3자에게 수집된 개인정보, 개인정보처리자가 생산한 개인정보, 서비스 제공 중 자동적으로 생성된 개인정보 등 포함

정보통신망법 <u>제30조</u>제2,4,5항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보유한 개인정보,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열람 및 제공 요청 가능
  - \*신용정보법(제38조, 제38조의2, 제39조), 의료법(제21조)에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및 사본 발급 요청 권리 보장

온라인개인정보처리 가이드라인 (정보통신망법 제30조 관련)

● 개인이 개인정보 열람 및 제공에 대해 언제든지 간편하게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메뉴나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음

#### To-Be

개인데이터 내려받기 메뉴를 개인이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시각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제공

#### To-Be

개인데이터 내려받기 시 기간, 범위, 형식, 전송방법 등에 대한 개인의 선택권 보장

## 통합조회 홍길동님의 통합자산조회 계좌 (예금, 적금) + 세모은행 매일예금 1.000원 + 네모은행 매일적금 500원 +연결 투자 (주식, 펀드) 대출 (신용, 주택담보) + 세모은행 주택대출 2,000원 100원 + 세모카드 현금서비스

#### 내정보관리 ▶ 내려받기 **M沙** MyData 홍길동님의 개인데이터를 다운로드하세요! 기간 전체 전체 ◯ 전체 ☐ 거래내역 범위 포인트 □ 구매내역 CSV HTML 형식 ☐ JSON ☐ XML □ 이메일 □ 휴대폰저장 전송 방법 메신저 Dropbox 다운로드

#### 1. 쉬운 접근

- ① 일관성있는 내려받기 아이콘 제공
- ② 개인이 내려받기 메뉴를 찾지 않아도, 내려받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

#### 2. 개인데이터 범위 및 형식

- ① 개인데이터의 범위는 세부서비스 혹은 개인에게 의미있는 단위로 구성
- ② 내려받은 개인데이터를 확인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형식으로 제공
- ③ 서비스 탈퇴 후에도, 내려받은 데이터를 개인이 확인할 수 있는 형식은 필수적으로 지원

#### 3. 다운로드 외 전송방식

① 개인의 휴대폰이나 PC에 직접 다운로드하는 방식 외에도 이메일, 메신저,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통해 전송하는 기능 지원

#### 무엇이 중요한가요?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자가 제3자(개인, 기관(업) 등)를 지정하여 개인데이터 전송을 요청하고,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자가 데이터 이동 실행** 

#### 공유대상지정

개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

#### 읽을 수 있는 형식

서비스 간 전송 시 기계가독형(machine-readable) 형식 지원

#### 표준화된 전송

서비스에서 서비스로 개인데이터가 전송되는 경우 API와 같은 표준화된 방식으로 제공

#### 무엇이 다른가요?

#### 현행 개인데이터 이동

#### 기관(업)이 결정하고 개인이 동의

제공 대상 기관(업)을 기관(업)이

결정한 뒤 개인에게 동의여부 확인

#### 주요 특징

## 개인이 결정하고

개인데이터

제3자 제공

비제휴기관(업)

간 개인데이터

화보

기관(업)이 실행

개인데이터 공유 대상을 개인이

결정한 뒤 데이터 전송 요청

마이데이터

API와 같이 안전하고 표준화된 전송방식 이용

스크래핑, 크롤링 등 개인에게 접속권한을 받아 데이터 수집

[사례: 영국 PDS 서비스 Mydex의 선별적인 개인데이터 공유 관리] 제3자(사람 및 기관(업))와 Mydex에 저장된 개인데이터 공유 시

계정소유자가 접근권한(permission)을 정하고, 변경할 수 있음





\*출처: https://pds.mydex.org/

####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에 저장된 개인데이터를 개인이 지정한 제3의 기관 및 기업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 개인이 \*공유는 개인데이터를 이동할 제3자를 지정하거나. 제3자에게 개인데이터 지정한 보유자의 개인데이터 활용을 승인하는 방식 모두 가능 제3자와 \*서비스 간 직접 전송 시 재사용 가능한 기계가독형 형태로 제공 공유 \*공유 시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데이터 확인이 가능한 형식도 지원 (예. 혈압측정데이터를 병원으로 보내는 경우) -기관(업)들은 개인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한 준비와 받기 위한 준비 모두 필요 \*개인데이터 보유자는 개인의 의지에 따라 해당하는 개인데이터를 제3자에게 개인데이터 공유를 위한 전송하기 위한 프로세스, 기술환경 등 준비 준비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자는 개인데이터 보유자에게서 전송된 개인데이터를 저장, 관리, 활용하기 위한 프로세스, 기술환경 등 준비 -개인데이터 전송 시 API와 같이 안전하고 표준화된 방식을 이용하도록 권고 개인데이터 \*개인의 통제권, 표준화, 보안 등의 관점에서 유리한 API 권고 전송방식 \*정부 정책 방향은 스크린 스크래핑 지양으로 결정(신용정보법 개정안에서는 유예기간 후 스크래핑 금지 예정)

#### [서비스 간 개인데이터 이동을 위한 제도적 근거]

기관(업)을 선택하도록 권고

● 제3자 제공동의는 현행법 상 기관(업) 간 개인데이터를 이동시킬 수 있는 제도적 근거 (서비스 간 제휴 있는 경우) 개인이 제휴된 기관(업)들 중 개인데이터를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 간 제휴 없는 경우) 개인정보열람위임을 통해 제3의 서비스에 개인데이터를 제공할 수는 있으나,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자가 기계가독형식의 개인데이터를 제공해야 하는 근거 부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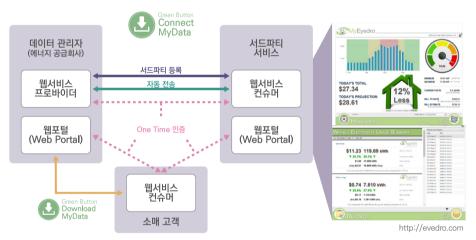
● 데이터 이동권은 원활한 서비스 간 개인데이터 공유를 위해 필수적이며, 법제화 논의 중



#### 사례

#### 그린버튼 서비스의 에너지 사용데이터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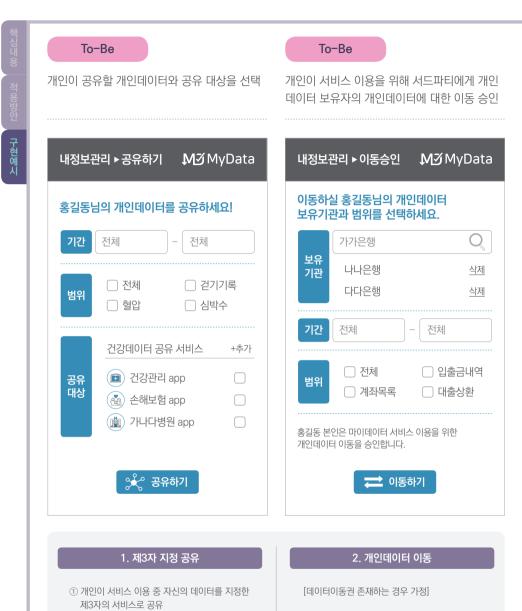
- 그린버튼 서비스는 미국 에너지부와 환경청에서 전기, 천연가스, 물 사용데이터를 소비자들이 다운로드 받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에너지 공급회사(데이터보유)는 서드파티(데이터 조회 및 분석 서비스 제공)에게 그린버트커넥트를 이용하여 소비자들의 에너지 사용데이터 전송
  - -다수의 서드파티 서비스 중 소비자가 선택한 서비스에서 에너지 사용데이터 활용 가능
  - -소비자가 서드파티 서비스에서 자신의 데이터 이용을 승인(동의)하면 에너지 회사에서 인증정보 확인 후, 서드파티로 직접 개인데이터 전송



\*출처: https://green-button.github.io/developers/b

#### 데이터 이동 프로젝트(Data Transfer Project)

- 서비스 간 개인데이터 이동을 지원하는 오픈소스 플랫폼 개발 프로젝트
  - -2018년 7월에 런칭하였으며 애플,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참여
  - -이동성과 상호호환성에 중점을 두고 프로젝트 진행
- 데이터 이동 프로젝트는 데이터모델과 데이터 어댑터 등을 이용하여 서비스 간 개인데이터 이동 지원
  - -(데이터모델) 서비스별 데이터포맷 및 API가 달라서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분야별 데이터모델을 정의하여 각 기관(업)들이 공통된 데이터 모델을 사용하도록 유도
  - -(데이터 어댑터) 각 기관(업)의 특정한 데이터 포맷 및 인증방식을 본 플랫폼 내에서 사용가능한 형식으로 변환하는 방법 제공



② 부가서비스로 제공 가능

- ① 개인이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자에게서 개인데이터 보유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데이터 이동 승인
- ② 개인이 개인데이터 보유자에게 제3자로 데이터 이동을 요청하는 경우도 가능
- ③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자 변경을 위한 개인데이터 이동 요청도 가능 (예: A블로그에서 B블로그로 이동)

## ı

#### 무엇이 중요한가요?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자는 **동의 및 개인데이터 활용 내역에 대한 정보를 쉽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개인데이터 활용내역공개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언제, 누가, 어떻게, 왜 이용했는지 확인 가능

#### 근거 있는 동의기반 활용

개인의 동의내역을 공개하여 개인데이터 동의 기반 활용여부 확인

####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현

마이데이터 생태계 내 이해관계자들이 동의영수증을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개인데이터 공유 가능



#### 무엇이 다른가요?

#### 현행 데이터 이용내역

마이데이터

여1회 확인

주요 특징

실시간 확인

일정 규모 이상의 기관(업)만 연1회 개인정보 이용내역알림 의무 부과

알림제공주기

실시간으로 동의 및 개인데이터 활용 내역 확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내용 (동의관련정보없음)

주요 알림 내용

동의내역을 포함하여 개인이 직접 내려받기한 이력까지 제공

#### [EU GDPR의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열람권]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Right to be informed) : 공정하고 투명한 처리 원칙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보주체에게 본인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정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알려 주어야 함

열람권(Right of access by the data subject):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처리상황과 적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인정보 및 형식, 관련기관, 목적 등에 대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개인데이터 처리내역에 대해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자는 개인데이터 동의부터 수집, 이용, 제공 등에 대한 처리내역을 개인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제공

-데이터영수증은 동의와 관련된 영수증과 활용(수집, 이용, 제공, 내려받기 등)에 관련된 영수증으로 구분

#### 개인데이터 동의 및 활용 현황 정보 제공

- -개인데이터 동의 및 활용 내역을 서비스 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메뉴를 제공하되, 요약정보와 상세정보(영수증)로 구분
  - \*요약정보 : 동의 및 활용(수집현황, 제공현황, 내려받기 현황 등)에 대한 주요내용을 시각적으로 표현
  - \*상세정보 : 동의 및 활용 이력과 함께 건별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영수증 제공
- ※활용 영수증은 동의내역을 기준으로 이벤트가 발생한 시점에 발행하며, 최초 동의에 의거하여 동일하게 수집, 이용, 제공되는 영역은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발행
- -동의영수증은 서비스 가입 시, 그리고 서비스 이용 중 동의내역을 변경 (동의, 철회, 재동의)하였을 때 발행
- -동의영수증 구성 항목 및 내용
  - \*동의유형에 따라 영수증 항목을 다르게 구성

## 동의영수증

	항목	내용
1	동의여부	동의, 철회, 재동의 등 동의의사
2	동의구분	동의 유형(예: 수집/이용, 제3자제공 등)
3	동의일시	동의의사를 표시한 일시
4	동의자	개인 혹은 대리인
5	동의요청자	동의를 획득한 기관(업)
6	개인데이터 항목	개인이 활용에 동의한 개인데이터 항목
7	개인데이터 활용 목적	개인이 동의한 개인데이터 활용 목적
8	동의세부내용	동의유형별로 항목과 내용을 다르게 구성 -제3자 제공 : 제공대상기관(업) -개인 외 기관(업)에서 수집: 수집기관(업)명
9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데이터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이용 영수증

- -수집/이용 영수증은 개인데이터의 출처에 따라 분류
- \*영수증의 이용기간 내에 별도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변경 영수증 발행

#### [개인으로부터 수집한 개인데이터]

	항목	내용
1	시작일	개인데이터 수집 및 이용을 시작한 일자
2	목적	수집 및 이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
3	개인데이터 항목	개인데이터 항목명
4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데이터 보유 및 이용기간 명시
5	관련 동의영수증 ID	수집 및 이용의 근거 제시

#### [제3의 기관(업)으로부터 수집한 개인데이터]

#### 데이터 영수증

	항목	내용
1	시작일	개인데이터 수집 및 이용을 시작한 일자
2	목적	수집 및 이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수집처	개인데이터를 수집하는 기관(업)명
4	개인데이터 항목	개인데이터 항목명
5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데이터 보유 및 이용기간 명시
6	관련 동의영수증 ID	수집 및 이용의 근거 제시

#### 내려받기 영수증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내려받기 할 때 발행

	항목	내용
1	시작일	내려받기한 일자
2	내려받기 형식	저장, 이메일, 메신저 등 내려받기 방식
3	개인데이터 항목	내려받은 개인데이터 항목명
4	개인데이터 형식	내려받은 개인데이터의 형식

#### 공유 영수증

-공유영수증은 개인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발행 \*영수증의 이용기간 내에 별도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변경영수증 발행

#### 데이터 영수증

	· ·	
	항목	내용
1	공유일	공유를 시작하거나 실행된 일자
2	목적	공유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제공자	개인 및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자
4	대상기관(업)	개인데이터를 공유받은 기관(업)명
5	개인데이터 항목	공유된 개인데이터 항목명
6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데이터를 제공받은 기관(업)의 개인데이터 보유 및 이용기간 명시
7	관련 동의영수증 ID	공유의 근거 제시

#### 참고

정보통신망법 제30조의2

동법시행령 제17조

-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수집한 이용자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을 주기적으로 개인에게 통지해야 함
-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 명 이상 혹은 전년도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연 1회 이상 개인정보이용내역 통지 의무(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7조)
- 정보주체의 '제3자 제공 동의' 철회 방안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 항목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기관, 제공목적, 제공한 개인정보 항목
  -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받은 기관 및 그 처리위탁을 하는 업무 내용

온라인 개인정보처리 가이드라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처리위탁 등에 대한 개인의 열람권 대응을 위해 별도의 메뉴를 이용하여 이용자별 맞춤형으로 상시 제공 하는 것을 권장(정보통신망법 제30조제2항 관련)
- 이용자별로 개인정보의 개별적, 구체적인 이용내역 통지 노력 필요 (정보통신망법 제30조의2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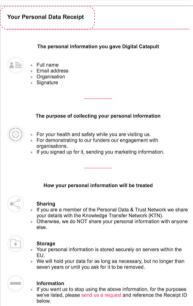
#### 사례

#### 디지털 캐타펄트의 개인데이터 이용내역조회

● 개인데이터를 활용하는 서비스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개인이 통제하는 개인데이터 수집/활용 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한 이용내역관리 적용 방안 제시



\*출처: Tatiana C. Styliari &Michele Nati, Researching The Transparency of Data Sharing: Designing a Consent Receipt, Digital Catapult, 2016.9



개인데이터 수집 및 이용 영수증

\*출처: Michele Nati, Personal Data Receipts: How transparency increases consumer trust, Digital Catapult, 2018.3

#### 칸타라의 동의 영수증 구현 표준

- Consent Receipt Specification Ver.1.1.0을 통해 개인데이터 활용 동의에 영수증을 제공하기 위한 기술적 구현방안 제시
  - -영수증 구현방안, 민감정보 등에 대한 고려사항, 영수증 예시 제공
- 동의영수증은 Json으로 구현하여,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
  - -영수증에 포함된 항목은 **동의방식, 민감정보여부, 수집대상 개인데이터, 수집 목적, 활용방식** (제3자 공유여부, 공유대상기관 등), 동의효력기간 등

\*출처: Richard Beaumont et al, Consent Receipt Specification Ver.1.1.0, Kantara Consent & Information Sharing Work Group, 2018.2.20

#### To-Be

동의, 수집, 내려받기, 공유 등 개인데이터 이용현황에 대한 요약정보 제공

#### To-Be

데이터영수증 목록조회 및 조건별 검색을 지원하고, 목록에서 각 영수증을 클릭하면 영수증 상세내용 제공

#### 내정보관리 ▶개인데이터 이용내역 알림

#### 홍길동님의 개인데이터 이용 내역을 확인하세요!



동의

+상세보기

부가서비스를 위한 수집/이용 동의 2건 마케팅을 위한 제3자 제공 동의 1건



수집된 개인데이터

+상세보기

일반개인정보(이름, 성별, 주소, 이메일) 금융기관 계좌 및 거래정보 건강검진정보



내려받기

+상세보기

디바이스 저장 5건 이메일 전송 3건 메신저 전송 2건



공유

+상세보기

가나다 은행 건강기관

영수증 목록 보기

내성모관리 ▶ 이용내역 영수증	<b>M</b>	
개인데이터 이용내역 영수증 목록		
	+목록만 보기	
기간 전체	- 전체	
□ 전체	□ 동의	
영수증 유형 고수집/이용	□ 동의변경	
□ 내려받기	□ 공유	
<b>35</b> <u>내려받기영수증</u> (2019.	11. 29 18:35)	
<b>34</b> <u>공유영수증</u> (2019. 11.	22 14:01)	
<b>33</b> <u>수집/이용영수증</u> (2019	. 11. 06 13:35)	
<b>32</b> <u>동의영수증</u> (2019. 10.	20 09:28)	
<b>31</b> 내려받기영수증 (2019.	10. 15 15:05)	

#### 1. 개인데이터 이용내역 알림

- ① 개인별 개인데이터 이용내역에 대한 실시간 요약정보 제시
- ② 개인이 원하는 경우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

#### 2. 개인데이터 이용내역 영수증 목록

- ① 전체 데이터영수증 목록 제시
- ② 조건검색을 통해 개인이 원하는 영수증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

#### 3. 영수증 유형

- ① 동의영수증
  - -수집/이용 동의(필수, 선택) -제3자 제공 동의(필수/선택) 등
- ② 데이터영수증
  - -수집/이용 영수증
  - -공유영수증
  - -내려받기영수증

#### To-Be

영수증은 제목, ID, 주요 내용, 발행기관정보로 구성

#### To-Be

동의내역에 대한 세부사항을 영수증 형태로 제시

## 회원가입 MyData ▶ 데이터영수증

영수증 제목	동의영수증
영수증 ID 8	쿠수증 ID C12345678
동의구분	부가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선택)
동의일시	2019년 9월 8일 13시 29분
동의자	홍길동 (서비스 이용자 본인)
영수증 세부내	용 나다 자산관리
개인데이터 항목	개인식별번호(휴대폰번호, CI), 멤버쉽가입정보
개인데이터 활용 목적	내자산서비스 활동지수 기반 포인트 적립
보유 및 이용기간	회원탈퇴 시
발행기관	가나다 자산관리

#### 회원가입 ▶동의영수증

#### 

동의영수증		
영수증 ID C12345678		
동의여부	동의	
동의구분	부가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선택)	
동의일시	2019년 9월 8일 13시 29분	
동의자	홍길동 (서비스 이용자 본인)	
동의요청자	가나다 자산관리	
개인데이터 항목	개인식별번호(휴대폰번호, CI), 멤버쉽가입정보	
개인데이터 활용 목적	내자산서비스 활동지수 기반 포인트 적립	
보유 및 이용기간	회원탈퇴 시	
발행기관	가나다 자산관리	

#### 1. 데이터영수증 구성

남당자 김자산 연락처 00-000-0000

- ① 영수증 제목
- ② 영수증 ID
- ③ 영수증 세부 내용 (영수증 유형별로 다르게 구성)
- ④ 발행기관정보

## 2. 동의변경 시 영수증 구성

- ① 개인이 동의내역을 변경하는 경우 동의변경 영수증 발생
- ② 동의변경영수증의 항목
  - -최초동의일시
  - -동의변경일
  - -변경내용(동의, 철회 등) 등



M% MyData

#### To-Be

개인의 동의에 기반하여 수행되는 개인데이터 활용은 영수증에 근거가 되는 동의영수증 ID를 함께 제시

#### To-Be

내정보관리

개인이 직접 내려받은 개인데이터에 대한 내려받기 방식, 항목, 형식 정보 제시

#### 내정보관리 ▶공유영수증 **M**ૐ MyData

공유영수증	
O.C.	부수증 ID S98765432
공유일	2019년 10월 5일 15시 08분
목적	맞춤형 상품추천
제공자	가나다 자산관리
대상기관	G카드
개인데이터 항목	개인식별번호(휴대폰번호, CI), 은행거래내역 (2018.01.01-2019.09.30) 카드사용내역 (2018.01.01-2019.09.30)
보유 및 이용기간	취득 후 1년
관련 동의 영수증 ID	C12341234
발행기관정보	가나다 자산관리

► 내려받기 영수증 <b>(**)</b> 나라		
	내려받기 영수증	
80	수증 ID D12345678	
일시	2019년 9월 8일 13시 29분	
내려받기 방식	구글드라이브에 전송 (aaabbb@gmail.com 계정)	
개인데이터 항목	통합계좌거래내역 (2019.01.01-2019.08.31) 포인트 적립내역 (2019.01.01-2019.08.31)	
개인데이터 형식	CSV	
발행기관명	가나다 자산관리	
발행기관정보	담당자 김자산 연락처 00-000-0000	

#### 1-1. 다수의 기관(업)에 공유하는 경우

① 개인데이터를 동일한 조건으로 다수의 기관(업)에 공유하는 경우 영수증은 1개로 발행

#### 1-2. 개인의 요청으로 공유하는 경우

① 관련 동의 영수증 ID를 공유요청 ID로 변경

> 예 : 홍길동이 0000년 00월 00일에 대상 기관(업)으로 공유 요청 (공유요청서 ID 기재)

#### 2. 영수증 발행 시점

- ① 개인데이터 관련 동의 및 활용에 대한 행위가 발생한 시점에 실시간으로 발행하는 것을 권고
- ② 1번의 동의로 동일한 행위가 지속되는 수집/이용 및 공유 등에 대해서는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발행

#### 3. 영수증 저장, 공유, 출력 지원

300

- ① 영수증을 파일로 저장하거나 출력할 수 있는 기능 지원
- ② 영수증을 이메일, 메신저 등을 통해 공유할 수 있는 기능 지원

# 부록 FAQ



Q1	마이데이터 관련 법(데이터 이동권 포함)은 무엇인가요?
Q2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Q3	데이터 이동권이란 무엇인가요?
Q4	열람권으로 개인데이터 활용이 가능한가요?
Q5	구체적, 개별적 동의란 무엇인가요?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필요한 데이터 항목을 하나하나 제시하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Q6	개인데이터 이용내역 알림과 데이터영수증은 어떻게 다른가요?
Q7	마이데이터에서의 개인데이터 이동과 현행법의 제3자 제공 동의는 무엇이 다른가요?
Q8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안내서에서 제시한 화면예시와 동일하게 구현해야 하나요?
Q9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 개인데이터를 주고받는 방법이나 데이터 형식이 정해져 있나요?

#### 〇1 마이데이터 관련 법(데이터 이동권 포함)은 무엇인가요?

현재 마이데이터 기본법과 같이 마이데이터가 중심이 되는 신규법률이 준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신용정보에 한해 개인데이터 이동권을 보장하고 본인신용정보관리업(MyData)을 허가제로 도입하는 내용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2018. 11. 15 의안번호 16636)에 포함하여 의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개인데이터 이동권 등을 「개인정보보호법」에 포함시켜「개인정보보호법」이 유럽 개인 정보보호법(GDPR)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부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O2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다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18. 11. 15 의안번호 16636)에서 개인신용정보에 한해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허가제로 도입하고자 의결을 추진 중이나 아직 법률이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2019.11.) 기준, 누구나 개인데이터를 활용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 개인데이터를 다루는 서비스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의료법」 등 개인데이터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O3 데이터 이동권이란 무엇인가요?

데이터 이동권이란 개인데이터의 주체인 개인이 본인정보를 원하는 제3자에게 이동시킬 수 있는 권리입니다. 데이터 이동권에 의한 개인데이터 이동은 개인이 이동 대상기관을 제한 없이 선택할 수 있고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보가 제공되므로 자유로운 개인데이터 이동이 가능합니다.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은 데이터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데이터 이동권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컴퓨터가 자동으로 읽고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형식(예. CSV, XML, JSON 등)



#### 〇4 열람권으로 개인데이터 활용이 가능한가요?

현행(2019. 11)법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의 데이터 열람권은 법률(「개인정보보호법」제35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0조의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8조, 「의료법」제21조)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 열람 시 사본 제공을 포함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시행규칙을 통해 전자파일 형식과 전자메일을 이용한 제공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열람권은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입니다. 하지만 기관(업)의 소극적 대처와 권리보장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 Q5 구체적, 개별적 동의란 무엇인가요?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필요한 데이터 항목을 하나하나 제시하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마이데이터 서비스 원칙 중 하나인 통제권은 개인이 본인정보의 공유 범위와 접근 권한을 자유롭게 결정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제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이 구체적. 개별적 동의입니다.

구체적, 개별적 동의란 개인이 제공하고 싶은 데이터와 제공하고 싶지 않은 데이터를 선택하도록 하고, 정보제공의 대상까지도 개인이 고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동의 시 개인데이터 항목이나 정보 제공대상을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선별적 동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핵심요소이므로 반드시 적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 구현 시 동의과정의 복잡도 증가 등 현실적 이슈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필수동의가 아닌 선택동의에 한해 선별적 동의를 적용하고, 선택 데이터 항목 또는 데이터셋 별 동의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구현할 것을 권고합니다. 개별동의의 선택대상 데이터 항목에 대한 수준은 서비스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향후 선별적 동의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개인의 개인데이터 통제권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Q6 개인데이터 이용내역 알림과 데이터 영수증은 어떻게 다른가요?

개인데이터 이용내역 알림과 데이터 영수증은 같은 개념입니다. 개인데이터 이용내역 알림은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자가 정보주체인 개인으로부터 확보한 개인데이터를 서비스를 위해 수집·이용·제공한 내역 및 개인이 서비스 내에서 본인정보를 다운받거나 타인에게 제공한 내역에 대해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알림을 영수증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데이터 영수증입니다.

#### O7 마이데이터에서의 개인데이터 이동과 현행법의 제3자 제공 동의는 무엇이 다른가요?

마이데이터는 개인데이터 이동권(개인이 개인데이터 보유자에게 본인의 개인데이터를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송하도록 요청하는 권리)이 보장된 환경에서 그 개념이 가장 올바르게 구현될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개인데이터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데이터 이동권이 없는 현행법 체계에서 개인데이터를 합법적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제3자 제공 동의'입니다. '제3자 제공 동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제3자에게 데이터를 이동시키는 방법입니다. '제3자 제공 동의'에 의한 개인데이터 이동은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자가 제시한 기관 간 개인데이터를 이동시킬 수 있으므로 개인입장에서 개인데이터 이동권이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 안에서 개인데이터를 이동시키는 방법이 현행법상 '제3자 제공 동의'입니다.

## Q8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안내서에서 제시한 화면예시와 동일하게 구현해야 하나요?

마이데이터 안내서에 담긴 화면예시는 안내서 내용의 이해를 돕기위해 참고용으로 작성된 '예시'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화면예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구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 이에이터 서비스에서 개인데이터를 주고받는 방법이나 데이터 형식이 정해져 있나요?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데이터를 확보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API를 통해 데이터를 연계하거나 개인 인증정보를 활용한 스크래핑이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는 개인데이터 확보 시 보안상 취약한 스크래핑 방식보다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API 방식을 권장합니다.

개인데이터를 내려받거나 전송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기계판독이 가능한 CSV(Comma Separated Values),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JSON(JavaScriptObjectNotation), RDF(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 등의 형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이 내려받는 경우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형식을 포함하여 제공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 마이데이터 서비스 안내서

**인 쇄** 2019년 12월 30일

**발 행** 2019년 12월 30일

**발행인** 민기영

**발행처**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